

방글라데시 대법원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(People's Republic of Bangladesh)
2. 수도 : 다카(Dhaka, 2,101만명)
3. 인구·면적 : 1억 6,788만명(2022), 14만 7570km²(한반도의 약 2/3)
4. 공용어 : 벵갈어
5. 1인당 GDP : 2,140달러(2021년)
6. 독립일 : 1971. 12. 16.(파키스탄으로부터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내각책임제, 단원제

1. 명칭 : 대법원

- Supreme Court of Bangladesh

2. 연혁

- 1971. 12. 16.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
- 1972. 11. 4. 헌법 제정 (1972. 12. 16. 발효)
- 1972. 12. 18. 대법원 설립
- 1973. 대법원규칙 제정

3. 구성

- 대법원은 상고부(Appellate Division)과 항소부(High Court Division)으로 이루어짐(헌법 제94조 제1항)
-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상고부 및 항소부의 대법관들로 구성되며,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만큼 상고부 및 항소부의 대법관을 임명함(헌법 제94조 제2항)
- 현재 상고부는 대법원장과 6인의 대법관(총7인), 항소부는 86인의 대법관으로

구성됨

- 대법원장은 상고부의 일원이며, 상고부의 대법관은 상고부에만, 항소부의 대법관은 항소부에만 소속됨(헌법 제94조 제3항)
-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독립적으로 사법적 기능을 행사함(헌법 제94조 제4항)
-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함(헌법 제95조 제1항)
- 대법관 자격 : 방글라데시 국민이어야 하며, 대법원 변호사 또는 방글라데시 법관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(헌법 제95조 제2항)
- 대법관의 정년은 67세이며, 부정행위나 직무수행 불능으로 전체 국회의원 2/3 이상의 결의로 통과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한 직을 유지함(헌법 제96조 제1항, 제2항)

4. 권한(헌법재판 관련)

- 대법원 상고부 :
 - 항소부가 헌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임을 인정하는 경우, 항소부의 판결, 명령 등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함(헌법 제103조 제2항 제a호)
- 대법원 항소부 :
 - 청구가 있는 경우,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지침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음(헌법 제102조 제1항)
 - 동등하게 효과적인 다른 구제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, 청구에 의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함(헌법 제102조 제2항)
- ※ 그 외에 헌법 제7조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규정하고, 제26조는 기본권에 합치하지 않는 법률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으며, 제44조는 기본권의 실현을 위하여 대법원 항소부에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사법심사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

5. 심리 및 결정

- 상고부 :

- 상고부는 사건의 심리 후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림(대법원 상고부 규칙 Order X 제1조)
 -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고, 심리중인 재판부의 의견이 동일한 수로 나뉘는 경우,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다른 대법관이나 더 많은 수의 재판부에 심리를 맡김(대법원 상고부 규칙 Order XI 제1조)
 - 재판부가 더 많은 수의 재판부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, 대법원장에게 회부하여 그러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(대법원 상고부 규칙 Order XI 제2조)
- 항소부 :
-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함(대법원 항소부 규칙 Chapter II 제1조)
 - 대법원장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항소부의 기능 이행을 위해 때때로 대법원 항소부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지침을 내릴 수 있음(대법원 항소부 규칙 Chapter IIIB 제1조)
- 상고부의 판결은 항소부를 구속하고, 상고부 및 항소부의 판결은 모든 하급심 법원을 구속함(헌법 제111조)

6. 연락처

- 주 소 : Supreme Court of Bangladesh
Ramna, Dhaka-1000
Bangladesh
- 전화번호 : +88-02-223381952
+88-02-223382785
- 팩스번호 : +88-02-223385058
- 이 메 일 : rg@supremecourt.gov.bd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supremecourt.gov.bd/web/>

※ 출처 : 방글라데시 대법원 웹사이트
방글라데시 헌법
방글라데시 대법원 상고부 규칙
방글라데시 대법원 항소부 규칙

(2022. 6. 작성)